

의안번호	제 204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민경환 의원 외 8
발의연월일	2008년 1월 10일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경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
----------	-----

발의연월일 : 2008. 1. 10.

발 의 자 : 민경환·이기동·이범윤·박종갑·이규완·이영복·이대원·권광택·정윤숙·(9인)

1. 제안이유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등 기본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를 확인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라.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신설(안 제8조)

마.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9조)

바.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사. 도지사는 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아. 공공부문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22조).

차.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붙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당해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도민참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

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 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 (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₆)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11.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4.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선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18. “센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말한다.

다.

19.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건축법령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0.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과(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면제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과(이하 “설치면제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한 것(이하 “확인서”라 한다)을 말한다.
23. “미 활용 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24.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는 학교·도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도는 도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⑦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도는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①시·군은 도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시·군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시·군은 도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담당공무원은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시에도 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설치면제 검토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센터안

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이 설치의무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도민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민은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 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제5장의 부문별 에너지 시책의 활성화 대책
10. 기타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1월 이내에 도보 및 도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개발·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위원회

제12조(설치) 도지사는 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소속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제18조(산업 부문)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송 부문) ①도지사는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시 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20조(건물 부문) ①도지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3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주택(단지포함)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⑨도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 부문) ①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②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제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관용차량 부제 실시 및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6.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설치

③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도시·택지·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공사비 5퍼센트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도지사는 민간부문 및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

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3조(재정지원) ①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택지·혁신도시 및 연수타운 등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지구별 계획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너지 상)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1. 에너지 시책 실적이 특히 우수한 단체 및 개인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에너지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①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①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

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①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 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1조 (신·재생에너지센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3. 기 보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관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기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